

통행금지공고

「도로법」 제58조제2항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운행을
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.

2014년 06월 11일

공 고 자 예 천 군



도로의 종류	도시계획도로	노 선 명	중로 2-3호
금지의 대상	모든 차량 (공사차량 제외)	구 간	예천읍 굴머리 일원 (통행금지구간 L=210m)
기 간	2014년 6월 16일부터 2014년 6월 22일까지		
이 유	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		
기 타	우회도로 지정 ☐ 버스노선 - 굴 머 리 ⇒ 제방도로 ⇒ 형제철물 ☐ 일반차량 - 굴 머 리 ⇔ 제방도로 ⇔ 형제철물 - 굴 머 리 ⇔ 효 자 로 ⇔ 형제철물		